

〈譯註〉

『舊唐書』·『新唐書』王毛仲傳 역주

정 병 준 *

〈목차〉

- I. 『구당서』 권106, 왕모중전
- II. 『신당서』 권121, 왕모중전

I. 『구당서』 권106, 왕모중전¹⁾

왕모중은 본래 高麗人이다. 부친인 遊擊將軍職事²⁾ [王]求婁가 잘못을 저질러 沒官³⁾ 된 후 왕모중을 낳았고, 그로 인해 玄宗에게 예측되었다. 천성이 똑똑하고 잘 깨달았으므로 [武則天 長壽 2년(693) 臘月] 현종

*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 1) 『구당서』 권106, 왕모중전, 中華書局, 3252~3255쪽을 저본으로 하였다. []는 보충하거나 원문의 한자를 병기할 때, 또 ()는 보충 설명할 때의 부호이다.
- 2) 유격장군은 종5품하의 武散官이다. 職事는 아마도 직책을 가졌다는 말로 이해된다.
- 3) 당대 人身의 沒官은 反逆緣坐되었을 때만 행해졌다(律令研究會 編, 『譯註日本律令』 1(唐律疏議譯註篇 1), 東京堂, 1979, 30쪽, 190쪽; 김택민, 『중국 고대 형법 -당 제국의 형법 총칙』, 아카넷, 2002, 106쪽, 668쪽; 김택민, 『당률총론(총론·명례편)』, 경인문화사, 2021).

이 臨淄王에 봉해지자⁴⁾ 항상 좌우에서 시중들게 하였다. [中宗 景龍 2년(708) 8월 현종이 兼潞州別駕가 되어⁵⁾ 임지로 나갔을 때 또한 李宜德⁶⁾이 날렵하고[趨捷] 騎射에 뛰어난 것을 보았는데, 다른 사람의 노복이었으므로 5만 錢을 주고 샀다. 경룡 3년(709) 겨울 현종이 장안으로 돌아온 후에는 두 사람에게 弓矢를 지니고 양측에서 호위하게 하였다.⁷⁾

이전에 태종 정관 연간에 官戶와 蕃口의 少年으로 날래고 용감한 자 100인을 뽑아 사냥 나갈 때마다 궁시를 지니고 황제 말 앞에서 사냥[射生]하게 하였는데, 표범 문양의 안장에 타고 짐승을 그린 문양의 적삼을 입게 하고 이를 ‘百騎’라고 불렀다.⁸⁾ 則天 시기에 그 숫자를 늘려 ‘千騎’라고 하고 左右羽林營에 나누어 예속시켰다. 孝和(중종의 시호)가 이를 ‘萬騎’로 부르고 使를 두어 지휘하게 하였다.⁹⁾ 현종이 藩邸(왕의 지위)에 있을 때 항상 그 군장들[豪俊]과 사귀고 때때로 음식과 재물을 하사하니 모두 현종을 따랐다. 왕모증이 현종의 뜻을 알고 그들을 대할 때 매우 정성을 다하

4) 이윽기는 무측천 수공 3년(687) 윤7월 楚王에 봉해졌고 天授 3년(692) 10월 出閣하여 王府를 열고 관속을 두었는데, 이때 그의 나이는 7세였다. 이듬해인 장수 2년(693) 金吾將軍 武懿宗의 문제제기로 臨淄郡王으로 改封되었다(『구당서』 권8, 현종본기, 165쪽). 초왕은 親王이고 임치왕은 군왕으로 각각 정1품과 종1품이다(니이다 노보루 저, 서용석·채지혜 역, 『唐代的 封爵과 食封制』, 『역사와교육』 10, 2010, 306~307쪽 참조).

5) 『구당서』 권8, 현종본기, 중종 경룡 2년 8월 조, “兼潞州別駕”(165쪽). 이때 이윽기의 나이는 23세였다.

6) 姜清波 저, 吳佩佩 역, 『唐 王朝에서 궁정정변을 일으키거나 평정하는 데 참여한 三人』, 『동국사학』 76, 2023, 322~323쪽 참조.

7) 『資治通鑑』 권209, 唐隆 원년(710) 6월 조, 中華書局, 6648쪽.

8) ‘태종 정관 연간’ 이하 구절의 사료적 의미에 관해서는 林美希, 『唐代前期北衙禁軍の展開と宮廷政變』, 『唐代前期北衙禁軍研究』, 汲古書院, 2020, 57~58쪽, 60쪽 등 참조.

9) 『南部新書』 卷甲, “貞觀中, 擇官戶蕃口之少年驍勇者數百人, 每出遊獵, 持弓矢於御馬前射生, 令騎豹文韉, 著獸文彩衫, 謂之百騎. 至則天漸加其人, 謂之千騎. 孝和又增之萬騎, 皆置使以領之”(中華書局, 7쪽).

자¹⁰⁾ 현종이 더욱 그 영민함을 아꼈다.

[경룡] 4년(710) 6월에 이르러 중종이 시해되고 韋后가 制를 칭하여 韋播와 高崇을 羽林將軍으로 삼아 千騎營을 관장하게 하니, 매질[榜槿(방추)]로 위엄을 세웠다.¹¹⁾ 그 營長 葛福順·陳玄禮 등이 함께 현종을 만나 원통함을 호소했는데, 마침 현종이 이미 劉幽求·麻嗣宗·薛崇簡 등과 거사하기로 모의한 때여서 서로 돌아보며 더욱 기뻐하였고 유유구를 시켜 은밀히 알리니 모두 목숨을 바쳐 명을 따르길 원하였다. [같은 달인 唐隆(710) 원년 6월]¹²⁾ 20일(庚子日) 밤에 이르러 현종이 [禁]苑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의덕이 따랐으나 왕모증은 피하여 들어가지 않았다. 乙夜(밤 10시)에 갈복순 등이 이르니¹³⁾ 현종이 말하길

公 등과 함께 大逆을 제거하여 사직을 안정시키고 각각 부귀를 얻는 것이 순간에 달렸는데, 무엇으로 믿겠는가?

라고 하자 갈복순 등이 명을 받들어 행동하길 청하였고, 잠깐 사이에 위파·韋璿(선)·고승 등의 머리를 가져오자 현종이 불을 들어 살펴보았다. 또 鍾紹京¹⁴⁾ 을 불러 [금원] 總監¹⁵⁾의 丁匠刀鋸¹⁶⁾ 100인을 이끌고 이르

10) 閻守誠·吳宗國 저, 임대희·우성민 역, 『당현종』, 서경문화사, 2012, 33쪽.

11) 『구당서』 권7, 예종본기, 경룡 4년 6월 조, “中宗崩, 韋庶人臨朝, 引用其黨, 分握政柄, 忌帝望實素高, 潛謀危害”(152쪽).

12) 『자치통감』 권209, 唐隆 원년 6월 조, 6648쪽.

13) 閻守誠·吳宗國, 『당현종』, 41쪽.

14) 『구당서』 권97, 종소경전, 3041~3042쪽; 『신당서』 권121, 종소경전, 4329쪽. 관련 연구로는 程凱麗, 「鍾紹京與唐隆政變關係研究」, 『洛陽理工學院學報(社會科學版)』 2016-4; 謝文學·李歡歡, 「從唐代五篇告身看唐隆政變和鍾紹京的沈浮(上) -兼對唐代五篇告身和兩篇諭祭文進行考釋」, 『許昌學院學報』 2019-6; 謝文學·李歡歡, 「從唐代五篇告身看唐隆政變和鍾紹京的沈浮(下) -兼對唐代五篇告身和兩篇諭祭文進行考釋」, 『許昌學院學報』 2020-1 등이 있다.

게 하여 빗장을 부수고 들어갔다.¹⁷⁾ 황후와 安樂公主 등이 모두 亂兵에게 살해되었다.¹⁸⁾ 그날 밤 少帝¹⁹⁾는 현종이 큰 공훈을 세웠다고 하여 平王으로 進封시켰다. 종소경과 유유구를 知政事²⁰⁾로 삼고 詔勅에 서명 [署]하게 하였다. 큰 공을 세운 설승간·마사중·갈복순·이의덕은 將軍으로 삼고, 그 다음은 中郎將으로 삼았다. 그 때 중종의 시신은 빈소에 있었고, 성 안 사람이 모두 흰 비단[縞素]을 입고 있었다. 날이 밝자 현종이 새로 공을 세운 자들을 불러 모두 자색과 비색 옷을 입히고 활시위를 당긴 채 鐵騎를 타게 하여 밖으로 나갔다. 온 성 사람들이 모여 구경하며 기쁘고 편안해 하였다. 반역을 범한 자는 모두 시신을 성 밖에 버렸다. 왕모증이 며칠 후 돌아왔으나, 현종은 질책하지 않고 파격적으로 장군으로 삼았다.

현종이 皇太子가 되어 監國하자²¹⁾ 상주하여 左右萬騎의 左右營을

15) 『唐六典』 권19. 京都苑總監 조, 中華書局, 530쪽; 『구당서』 권5, 高宗本紀下, 永淳 원년(682) 5월 조, “壬寅, 置東都苑總監”(109쪽).

16) 이때의 刀鋸는 갈·톱의 장인을 의미한다.

17) 『구당서』 권97, 종소경전, “景龍中, 爲苑總監. 玄宗之誅韋氏, 紹京夜中帥戶奴及丁夫以從”(3042쪽); 『신당서』 권121, 종소경전, “景龍中, 爲苑總監, 會討韋氏難, 紹京帥戶奴·丁夫從”(4329쪽); 『구당서』 권7, 예종본기, 唐隆 원년(710) 6월 조, “庚子(20일)夜, 臨淄王諱與太平公主子薛崇簡·前朝邑尉劉幽求·長上果毅麻嗣宗·苑總監鍾紹京等率兵入北軍, 誅韋溫·紀處訥·宗楚客·武延秀·馬秦客·葉靜能·趙履溫·楊均等, 諸韋·武黨與皆誅之”(152쪽). 閻守誠·吳宗國, 『당현종』, 42쪽 참조.

18) 『신당서』 권5, 예종본기, 당릉 원년 6월 조, “臨淄郡王隆基率萬騎兵入北軍討亂, 誅韋氏·安樂公主及韋巨源·馬秦客·駙馬都尉武延秀·光祿少卿楊均”(116쪽); 同, 현종본기, “乃夜率幽求等入苑中, 福順·仙臯以萬騎兵攻玄武門, 斬左羽林將軍韋播·中郎將高嵩以徇. 左萬騎由左入, 右萬騎由右入, 玄宗率總監羽林兵會兩儀殿, 梓宮宿衛兵皆起應之, 遂誅韋氏”(121쪽).

19) 『신당서』 권5, 예종본기, 경릉 4년(710) 6월 조, “壬午, 韋皇后弑中宗, 矯詔立溫王重茂爲皇太子. … 甲申, 乃發喪, 又矯遺詔, 自立爲皇太后, 皇太子即皇帝位, … 改元曰唐隆”(115~116쪽).

20) 參知政事, 즉 재상을 말한다.

21) 『신당서』 권5, 예종본기, 당릉 원년(710) 6월 조, “丁未, 立平王隆基爲皇太子”(117

龍武軍으로 바꾸고 좌우우림과 함께 北門四軍이라 하고, 갈복순 등을 장군으로 삼아 지휘하게 하였다. 용무군의 군관[官]은 모두 공신으로서 하사품[錫賚]을 받고 '唐元功臣'(원래는 唐隆功臣)²²⁾이라 칭해졌다. 장안의 良家 자제들이 부세·요역[征徭]을 회피하기 위해 재물을 바쳐[納資] 용무군에 소속되길 원하였고 마침내 매 軍²³⁾이 수 천인에 이르렀다. 왕모중은 東宮의 낙타·말·매·개 등의 坊을 전적으로 관장하였는데, 해가 지나기 전에 대장군에 오르니 등급이 3품이었다.²⁴⁾ 先天 2년(713) 7월 왕모중은 蕭[至忠]과 岑[義] 등을 주살하는 데 참여한 공²⁵⁾으로 輔國大將軍·左武衛大將軍·檢校內外閑廐²⁶⁾·兼知監牧使²⁷⁾를 제수받고 霍國公·實封 500호로 진봉되었다. 왕모중은 奉公·正直하고 權貴를 피하지 않았으므로 두 營의 만기 공신과 한구의 관리들이 모두 그 위세를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감히 대들지[犯] 못하였다. 금원에서 황무지[草萊]를 개간하여[營田] 항상 수확하였는데, 모두 풍족하고 넘쳤으므로 현종이 재능 있다고 여겼다. 개원 14년(726) 그 부친을 秦州刺史²⁸⁾로 추증하였다.

쪽); 同, 景雲 2년(711) 2월 조, “丁丑, 皇太子監國”(118쪽).

22) 閻守誠·吳宗國, 『당현중』, 84쪽; 林美希, 「左右龍武軍の盛衰 -唐元功臣とその後の禁軍」, 『唐代前期北衛禁軍研究』, 149~150쪽 참조.

23) 左右軍이 있었다.

24) 『자치통감』 권210에 의하면, 곧이어 先天 2년(713) 7월 현종이 太平公主를 제거할 때 왕모중은 龍武將軍이었다(6683쪽). 이에 대한 胡三省의 注에서는 “景雲初, 以左右萬騎與左右羽林爲北門四軍, 置左右龍武將軍以領萬騎, 位從三品”이라 한다.

25) 현종이 태평공주를 제거할 때 세운 공을 가리키는데, 왕모중은 황제 마구간(閑廐)의 말과 병사 300여 명을 접수하여 황제가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고(『자치통감』 권210, 선천 2년 7월 조, 6683쪽), 또 王琚·岐王·薛王·姜皎·王守一과 함께 鐵騎를 이끌고 承天門에 당도하여 거사 성공에 공헌하였다(『신당서』 권121, 王琚傳, 4333쪽).

26) 林美希 저, 정병준 역, 「唐代 前期의 閑廐體制와 北衛禁軍」, 『동국사학』 78, 2023 참조.

27) 閻守誠·吳宗國, 『당현중』, 149쪽 등.

왕모중은 莊宅을 하사받고 노비·낙타·말·돈·비단이 셀 수 없이 많았지만, 항상 한구 側內²⁹⁾의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매년 연회에서 시중들 때면 諸王과 姜皎³⁰⁾ 등과 함께 황제의 휘장[御幄] 앞에서 탑상[榻]을 이어서 앉았다. 현종은 왕모중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면 무엇을 잃은 듯 망연해하다가 왕모중이 나타나면 기뻐서 밤을 함께 보내며 잠들곤 하였다. 그 처가 이미 邑號 國夫人³¹⁾이 되었는데, 또 처 李氏를 하사하고 국부인으로 삼았다.³²⁾ 궁궐에 들어가 조알할 때마다 두 부인이 함께 하사품을 받았다. 아들을 낳으니 어린아이 때 5품을 제수받고 황태자와 함께 놀았으므로, 환관 楊思勗·高力士 등이 항상 피하고 두려워하였다[避畏]. 개원 7년(719) [3월] 特進³³⁾으로 승진시키며 行太僕卿에 임명하였으며³⁴⁾ 나머지 [관작]은 이전과 같았다. 개원 9년(721) [4월] 持節充朔方道防禦討擊

28) 秦州는 고구려가 멸망한 후 고구려인들이 대거 이주되었던 隴右에 위치하며, 『당육전』이 완성된 개원 27년 경에도 진주 등에 高麗兵이 있었다(정병준, 「唐朝의 高句麗人 軍事集團」, 『동북아역사논총』 24, 2009, 198쪽).

29) 측내는 側門의 안쪽이란 말로 이해된다. 측문은 中門 이외의 문을 가리키며, 궁성 및 기타 官衙에서 사용했던 용어이다(松本保宣, 「唐代의 側門論事について」, 『東方學』 86, 1993, 4~5쪽).

30) 『구당서』 권59, 姜皎傳, 2334~2336쪽; 『신당서』 권91, 姜皎傳, 3793~3794쪽.

31) 『당육전』 권2, 尚書吏部, 司封郎中·員外郎 조, “王母·妻爲妃. 一品及國公母·妻爲國夫人, 三品已上母·妻爲郡夫人, 四品若勳官二品有封, 母·妻爲郡君, …”(中華書局, 39쪽).

32) 『山堂肆考』 권94, 並拜封爵 조, “六帖安重榮娶二妻, 高祖並拜封爵. 又王毛仲有兩妻, 一上所賜者, 皆有國色”.

33) 정2품의 文散官이다.

34) 『자치통감』 권212, 개원 7년 3월 조, “乙卯, 以左武衛大將軍·檢校內外閑廐使·苑內營田使王毛仲行太僕卿. [胡三省注: 唐初以尚乘局掌內外閑廐之馬十二閑, 既置內外閑廐使專掌御馬, 因以尚乘局隸閑廐使, 苑內諸監本隸司農寺, 今亦隸苑內營田使] 毛仲嚴察有幹力, 萬騎功臣·閑廐官吏皆憚之, 苑內所收常豐溢. 上以爲能, 故有寵. 雖有外第, 常居閑廐側內宅, 上或時不見, 則悄然若有所失, 宦官楊思勗·高力士皆畏避之”(6735쪽).

大使에 임명하여 左領軍大總管 王峻 및 天兵軍節度使 張說과 함께 동쪽으로 幽州節度使 裴旻先 등과 협의[計會]하게 하였다.³⁵⁾

왕모중은 통솔이 엄정하였고 목축하는 동물들이 크게 번식하여 마침내 처음의 몇 배가 되었다.³⁶⁾ 꼴·식량[芻粟]을 감히 흠치는 사람이 없었고 매년 남겨서 이월하는 것이 항상 수만斛에 달하였다. [일을 맡은 지] 3년이 되지 않았을 때 [개원 13년(725) 11월] 태산 봉선을 호종하였는데, 목축 말 수만 필을 이끌고 따르면서 색깔 별로 하나의 대열을 이루게 하니, 바라보면 마치 구름무늬로 짠 비단과 같았으므로 현종이 더욱 기뻐하였다. 태산 밑에서 宰相 源乾曜와 장열에게 좌우 丞相을 더해주고 왕모중에게 開府儀同三司³⁷⁾ 를 더해주었다.³⁸⁾ 현종이 선천 연간에 재위에 오른 후 15년 동안 개부에 이른 자는 황후의 부친 王同(仁?)³⁹⁾ 皎, 姚崇, 宋璟,⁴⁰⁾ 왕모중 4인뿐이다. 또 장열에게 칙서를 내려 ‘監牧頌’⁴¹⁾ 을 지어 공

35) 『자치통감』 권212, 개원 9년 4월 조, “以太僕卿王毛仲爲朔方道防禦討擊大使, 與王峻及天兵軍節度大使張說相知討康待賓”(6745쪽); 『신당서』 권5, 현종본기, 개원 9년 7월 조, “己酉, 王峻執康待賓”(128쪽).

36) 『潘水集』 권6, 「原州後圍廳壁題記」, “又命開府霍國公毛仲爲內外閑廐使總領之, 太僕少卿秦州都督張景順爲監牧都副使, 就督之. 至開元十三年, 馬孳至四十三萬, 牛五萬, 羊二十八萬. 雖不及貞觀麟德之盛, 自東漢魏晉已還, 皆莫可及”.

37) 중1품의 문산관이다.

38) 『자치통감』 권212, 개원 14년 11월 조, “上初卽位, 牧馬有二十四萬匹, 以太僕卿王毛仲爲內外閑廐使, 少卿張景順副之. 至是有馬四十三萬匹, 牛羊稱是. 上之東封, 以牧馬數萬匹從, 色別爲羣, 望之如雲錦. 上嘉毛仲之功, 癸巳(13일), 加毛仲開府儀同三司. 甲午(14일), 車駕發泰山”(6767쪽).

39) 『신당서』 권121, 왕모중전 참조.

40) 『자치통감』 권212, 개원 13년 12월 조, 6768~6769쪽에는 왕모중과 송경에 관한 일화가 소개되어 있다.

41) 『唐會要』 권72, 馬, 개원 13년 조, “張說爲隴右羣牧使頌, 云, …… (1543쪽); 『文苑英華』 권869, 「隴右監牧頌德碑一首」(張說), “公名毛仲, 姓王氏, 開元佐命之元勳, 東國亡王之後裔”(中華書局, 4584쪽); 『唐文粹』 권22, 「大唐開元十三年隴右監牧碑頌并序」(張說), 浙江人民出版社, 1986, 4~6면.

업을 찬미하게 하였다. 개원 17년(729) 황제를 따라 五陵⁴²⁾ 을 조알하니 다시 왕모중의 부친을 益州大都督으로 추증하였다.

왕모중은 더욱 교만해져 일찍이 병부상서가 되길 청하자 현종이 기뻐하지 않았는데, 왕모중이 불만스러워하는 것이 말과 얼굴빛에 나타났다. 또 갈복순의 아들이 왕모중의 딸과 결혼하였고,⁴³⁾ 이의덕과 唐地文 등 수십 인이 모두 왕모중과 잘 지내면서 그 권세에 의지하여 불법을 많이 저질렀다. 환관 등은 그 위세의 왕성함이 자신들을 넘는다고 질투하여 오로지 그 죄를 찾아내는 데 힘썼으나, 오히려 더욱 거만해졌다. 품계가 높은 환관을 보면 멸시하듯이 바라보고, 품계가 낮은 자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뜻을 거스르면 자신의 노복처럼 모욕을 주었다. 고령사 무리의 원한이 골수에 스며들었다. 왕모중이 은총을 받던 중 [개원 18년(730) 11월] 처가 아이를 출산하였고 일찍이 금원의 정자를 빌려 더위를 식히려 하니 현종이 빌려주었다. [같은 달] 환관의 모함이 점점 심해져서 말하길 “北門 노복의 관직[奴官]이 크게 성하니 군장[豪者]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있다. 그를 제거하지 않으면 필시 큰 우환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하였다.⁴⁴⁾

후에 왕모중이 太原 軍器監에게 무기를 요구[索]하자 당시 嚴挺之가 少尹으로 있으면서 이를 상주하였다. 현종은 그 무리가 놀라고 두려워하여 난을 일으킬까 우려해서 그 사실을 숨겼다가 [개원 19년(731) 정월] 조서를 내려 말하였다. 즉

개부의동삼사·兼殿中監·霍國公·內外閑廐監牧都使 왕모중은 미천하고 공적이 없었으나 家臣에서 발탁되어 朝位에 올랐다. 은총을 다룰 자가 없고 위임하는 것이 매우 컸다. 티끌만큼의 공헌이 없으면서도 교만의 마음

42) 고조의 獻陵, 태종의 昭陵, 고종의 乾陵, 中宗의 定陵, 睿宗의 橋陵을 말한다.

43) 『자치통감』 권213, 개원 17년 5월 조, 6785쪽.

44) 『자치통감』 권213, 개원 18년 11월 조, 6793쪽.

을 멋대로 드러냈다. 이전에 거사할 때 갑자기 도망쳤지만, 옛정을 깊이 생각하고 관용의 뜻을 펼쳐 특별한 영예를 누리게 하였으나 잘못을 뉘우친다는 얘기를 듣지 못하였다. 공무에 있어서는 힘을 다하지 않고 평상시 원망의 말을 많이 하였다. 그 잘못을 헤아리면 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하나 우매함을 용서하여 멀리 좌천시킨다[貶]. 瀼州別駕員外置長任으로 삼으니 전담 사신이 호송하여 역마를 달려 임지에 이르고, 중간에 왕래하거나 업무 처리하는 것[判事]을 허용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다. 좌령군대장군·耿國公 갈복순⁴⁵⁾은 壁州員外別駕로 폼하고, 左監門將軍·盧龍子 당지문은 振州員外別駕로 폼하고, 右武衛將軍·成紀侯 李守德은 嚴州員外別駕로 폼하였다. 이수덕은 본래 [李]宜德이었는데, 공을 세운 후 개명하였다.⁴⁶⁾ 또 右威衛將軍 王景曜는 黨州員外別駕로 폼하고, 右威衛將軍 高廣濟는 道州員外別駕로 폼하였다. 왕모중의 아들 太子僕 [王]守貞은 施州司戶로 폼하고, 太子家令 [王]守廉은 溪州司戶로 폼하고, 率更令 [王]守慶은 鶴州司倉으로 폼하고, 左監門長史 [王]守道는 涪州參軍으로 폼하였다. 連累된 자가 수십 인이었다. 또 조서를 내려 왕모중을 죽이게 하니 永州에 이르러 목을 졸라 죽였다.⁴⁷⁾

그 후 환관이 더욱 세력을 떨쳤으나, 진현례는 순박하고 스스로 근신하며 궁궐을 宿衛하였고 절개가 쇠하지 않았다. 천보 연간에 현종이 [별궁

45) 『자치통감』 권213, 개원 20년 9월 조, “勃海靺鞨王武藝遣其將張文休帥海賊寇登州, 殺刺史韋俊, 上命右領軍將軍葛福順發兵討之. [胡三省注: 去年春, 葛福順方以黨附王毛仲貶, 今則仍爲宿衛, 蓋毛仲既誅, 福順等復敘用也. 開元九年, 貶王峻梓州, 己而復爲尙書, 復居邊任, 事亦類此]”(6799쪽).

46) 『신당서』 권121, 李守德傳, “守德本名宜得, 立功乃改今名, 位武衛將軍. 嘗遇故主於道, 主走避, 守德命左右迎之至第, 親上食奉酒, 主流汗不敢當. 數日, 入奏曰, ‘臣蒙國恩過分, 而故主無寸祿, 請解官授之.’ 帝嘉其志, 擢爲郎將”(4336쪽).

47) 『자치통감』 권213, 개원 19년 정월 조, 6793쪽.

인 華淸宮에서 말을 타고 궁문을 나가 虢國夫人⁴⁸⁾의 집으로 가려고 하자, 진현례가 “칙을 내려 신에게 명하지 않았으니 천자께서는 가벼이 가실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 때문에 현종은 말고삐를 돌렸다. 다른 해 정월 중반이 될 무렵 현종이 화청궁에 있다가 밤에 나가 놀려고 하자, 진현례가 상주하여 “궁 밖은 넓은 들판이어서 모름지기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만약 밤에 놀려고 하신다면 원컨대 도성(城關)로 가시길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현종이 또다시 이를 어길 수 없었다. 안록산이 반란을 일으키자 진현례는 성 안에서 楊國忠을 주살하려고 하였다가 일을 이루지 못했으나 마침내 馬嵬에서 참살하였다. 현종을 따라 巴蜀으로 갔다가 돌아와 蔡國公·實封300호에 봉해졌다. [肅宗] 上元 원년(760) 8월 벼슬을 그 만두었다.⁴⁹⁾

II. 『신당서』 권121, 왕모중전⁵⁰⁾

왕모중은 高麗人이다. 부친이 사건에 연루되어 官奴로 몰수된 후 왕모중을 낳았다. 그리하여 자라면서 臨淄王을 섬겼다. 왕(현종)이 潞州로 나갔을 때 李守德이란 자가 다른 사람의 노비였는데 騎射에 뛰어났으며

48) 후지요시 마스미 저, 정병준 역, 『비산버선은 흙먼지 속에 뒹굴고 -안녹산과 양귀비』, 시공사, 2003, 122~125쪽, 187쪽.

49) 『신당서』 권121, 진현례전. “陳玄禮宿衛宮禁, 以淳篤自檢. 帝嘗欲幸虢國夫人第, 諫曰, ‘未宣敕, 不可輕去就’, 帝爲止. 後在華淸宮, 正月望夜, 帝將出游, 復諫曰, ‘宮外曠野無備豫, 陛下必出游, 願歸城關’, 帝不能奪. 安祿山反, 謀誅楊國忠關下, 不克, 至馬嵬, 卒誅之. 從入蜀. 還, 封蔡國公. 及李輔國遷帝西內, 玄禮以老卒”(4337쪽).

50) 『신당서』 권121, 왕모중전, 4335~4337쪽.

로 왕이 사서 거두어 함께 좌우에서 시증들게 하였는데, 왕모중은 총명하고 잘 깨달았다. [중종] 景龍 연간에 왕이 장안으로 돌아오자 두 사람은 항상 화살통[房箠]을 지고 따랐다. 왕이 자주 萬騎의 帥長 및 豪俊을 불러 음식과 金帛을 하사하여 그 환심을 얻었다. 왕모중이 왕의 뜻을 알아채고 그 역시 성심을 다해 교분을 맺으니 왕이 가상하게 여겼다.

위후가 황제를 대신하여 정치를 행하여[稱制] 韋播와 高崇을 우림장군으로 삼아 萬騎를 관장하게 하니, 가혹함과 엄함으로 위엄을 세웠다. 果毅 갈복순과 진현례가 왕에게 호소하였는데, 마침 왕이 劉幽求·薛崇簡 및 利仁府折衝 麻嗣宗과 함께 거사를 모의할 때였다. 유유구가 이를 낚시지 알리자 모두 목숨을 바치길 원하였고 마침내 들어가 위씨를 쳤다. 이수덕은 왕[帝]을 따라 금원[苑中]에 머물렀으나, 왕모중은 숨어서 나오지 않다가 일이 끝난 며칠 후 나타났다. 하지만 왕은 질책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예에 따라 將軍으로 발탁하였다.

왕이 황태자가 되어 왕모중을 동궁의 말·낙타·매·개 등의 坊을 관장하게 하였다. 1년도 지나지 않아 大將軍이 되니 관계가 3품이었다. 함께 蕭至忠 등을 주살한 공으로 輔國大將軍·檢校內外閑廐·知監牧使로 승진하고 霍國公·실봉500호로 진봉되었다. 諸王 및 姜皎 등과 함께 궁궐에서 황제를 시봉할 때 [황제와?] 탑상[榻]을 이어서 앉기에 이르렀다. 황제는 왕모중이 잠시도 보이지 않으면 망연하게 뭔가를 잃은 듯했고, 다시 보이면 마음을 놓았다[釋然]. 개원 9년(721) 조서를 내려 持節·朔方道防禦討擊大使로 삼으니 左領軍大總管 王晙, 天兵軍節度使 張說, 幽州節度使 裴仙 등과 함께 자주 일을 모의하였다.

왕모중은 처음에 발탁[飾擢]되자 자못 법도를 견지하고 權貴를 피하지 않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 두 營의 萬騎 및 閑廐의 관리가 그를 무서워하여 감히 잘못을 범하지 못해 설령 官田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도 감히 떨 나무도 거두지 못하였다. 목축에 더욱 힘을 쏟아 번식이 많아졌다. 처음에

監馬가 24만이었는데, 뒤에 43만에 이르렀고 소·양은 모두 몇 배가 되었다. 苜蓿와 苜蓿을 1,900 頃에 심어 겨울에 대비하였다. 죽은 가축을 팔아 비단 8만을 얻었다. [劍南道 雅州 巖道[縣]⁵¹⁾의 오랑캐 사내아이[獋僮] 1천 인을 모집하여 목동으로 삼았는데, 건초·콩[芻菽]을 점검하니 새는 것이 없어 매년 수만 石이 남았다. 황제를 따라 동쪽으로 가서 봉선을 행할 때[東封] 牧馬 수만 필을 동원하여 매 1隊마다 색깔을 달리하니 전체 모양이 마치 錦繡와 같았으므로 天子가 재간 있다고 하였다. 장안으로 돌아와 開府儀同三司를 더해주었는데, 개원 연간 이후에는 단지 王仁皎·姚崇·宋璟과 왕모중이 그것을 얻었다.

하지만 小人의 자질이어서 뜻을 이룬 후 교만해져서 마침내 兵部尚書를 원하였는데, 황제가 불쾌하게 여기자 왕모중이 원망하였다. 갈복순과 인척관계를 맺고 이수덕 및 좌감문장군·노룡자 당지문과 左右威衛將軍 王景耀·高廣濟 등 수십 인이 왕모중과 의지하며 간사한 일을 저질렀다. 왕모중은 황제와의 옛정을 믿고 가장 불법을 행하였다.⁵²⁾ 中使가 그 집에 이르러 조서를 선포하면 왕모중은 심히 공손하지 않았으며 그 지위가 낮으면 혹 거만하게 앉아 접견하고 뜻에 어긋나면 바로 업신여기며 욕을 하고 기세로 능멸하며 그 위로 올라섰으므로 高力士·楊思勳 등이 원한을 품었다. 왕모중은 두 명의 처가 있었는데, 그 하나는 황제가 하사하였으며 모두 國邑을 가졌다. [개원 18년(730) 11월] 일찍이 아들을 낳자 황제가 고력사에게 명하여 재물을 하사하고 아들에게 5품관을 제수하였다. [고력사가] 돌아오자 묻길 “왕모중이 기뻐하던가”라고 하였다. 고력사가 奏하길 “왕모중이 臣을 뵈히 바라보면서 말하길 ‘이 아들이 또한 어찌 3품관을 욕되게 하겠는가’라고 하였다”고 하자 황제가 화내며 말하길 “이전에 왕모중

51) 『구당서』 권41, 지리지4, 검남도, 雅州 조, 1683쪽.

52) 『자치통감』 권213, 개원 18년 11월 조, 6792쪽.

이 나를 저버렸으나 일찍이 마음에 두지 않았는데, 지금 갓난아이를 가지고서 돌아보며 운운하는구나”라고 하였다. 고력사 등은 황제가 화난 것을 알고 다른 날 조용히 말하길 “北門의 奴官은 모두 왕모중과 잘 지내는 사이여서 제거하지 않으면 필히 큰 화란을 일으킬 것입니다”라고 하였다.⁵³⁾ 후에 왕모중이 太原으로 서신을 보내[移書] 무기[甲仗]를 요구하자 少尹 嚴挺之가 황제에게 보고하였다. 황제는 왕모중이 난을 일으킬까 두려워서 그 상황을 숨겼다. [개원] 19년(731) [정월] 조서를 내려 瀼州로 貶하고, 갈복순을 壁州, 이수덕을 嚴州, 노룡자 당지문을 振州, 왕경요를 黨州, 고광제를 道州로 [편하여] 모두 別駕員外置로 삼았다. 왕모중의 네 아들은 모두 官을 박탈하고 惡地로 편하였으며, 緣坐된 자가 수십 인이었다. 조서를 내려 왕모중을 [江南西道 永州] 零陵[縣]⁵⁴⁾에서 목을 졸라 죽이게 하였다.⁵⁵⁾

53) 『자치통감』 권213, 개원 18년 11월 조, 6793쪽.

54) 『구당서』 권40, 지리지3, 江南西道, 永州 조, 1625쪽.

55) 『신당서』 권121, 卷末의 贊曰, “幽求之謀, 紹京之果, 日用之智, 珞之辯, 皆足濟危紓難, 方多故時, 必資以成功者也. 雄邁之才, 不用其奇則厭然不滿, 誠不可與共治平哉! 姚崇勸不用功臣, 宜矣. 然待幽求等恨太薄云. 毛仲小人, 志得而驕, 不足論已”(4337쪽).

